

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
2021. 12. 1.(수) 10:00

제23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일부개정 조례안
[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]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55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. 11. 10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11. 10.

2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도입과 ‘위드 코로나’ 맞춤형 방역체계 확립 등 공공 보건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정원 총수 등을 조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정원의 총수를 1,172명에서 1,177명으로 조정함(안 제2조)
 - 집행기관의 정원: 1,146명 → 1,149명 (증 3)
 -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: 26명 → 28명 (증 2)
- 나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준을 조정함(안 별표 3)
 - 총 계: 1,172명 → 1,177명 (증 5)
 - 일 반 직 계: 1,168명 → 1,173명 (증 5)
 - 5 급 계: 52명 → 53명 (증 1)
 - 6급 이하 계: 1,105명 → 1,109명 (증 4)

현	행	개	정	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</u> <u>정원 조례</u>		<u>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</u> <u>정원 조례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<u>1,172명</u> 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	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1,177명</u> ----- ----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집행기관의 정원: <u>1,146명</u> 2.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: <u>26명</u>		1. ----- <u>1,149명</u> 2. ----- <u>28명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 3]		[별표 3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</u> (제4조 관련)		<u>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</u> (제4조 관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기관별 직급별</th> <th rowspan="2">총계</th> <th rowspan="2">본청</th> <th colspan="2">구의회사무국</th> <th rowspan="2">보건소</th> <th rowspan="2">동</th> </tr> <tr> <th></th> <th>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><u>1,172</u></td> <td colspan="4"><u>1,172</u></td> </tr> <tr> <td>정 무 직</td> <td>1</td> <td colspan="4">1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<u>1,168</u></td> <td colspan="4"><u>1,168</u>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8</td> <td>6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</td> <td>52</td> <td>32</td> <td>2</td> <td>8</td> <td>10</td> </tr> <tr> <td>6급 이하 계</td> <td><u>1,105</u></td> <td colspan="4"><u>1,105</u>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 계</td> <td>2</td> <td colspan="4">2</td> </tr> <tr> <td>별정직 계</td> <td>3</td> <td colspan="4">3</td> </tr> <tr> <td>5급 상당</td> <td>1</td> <td colspan="4">1</td> </tr> <tr> <td>6급 상당 이하</td> <td>2</td> <td colspan="4">2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구의회사무국		보건소	동			총 계	<u>1,172</u>	<u>1,172</u>				정 무 직	1	1				일반직 계	<u>1,168</u>	<u>1,168</u>				3급	1	1				4급	8	6	1	1		5급	52	32	2	8	10	6급 이하 계	<u>1,105</u>	<u>1,105</u>				전문경력관 계	2	2				별정직 계	3	3				5급 상당	1	1				6급 상당 이하	2	2		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기관별 직급별</th> <th rowspan="2">총계</th> <th rowspan="2">본청</th> <th colspan="2">구의회사무국</th> <th rowspan="2">보건소</th> <th rowspan="2">동</th> </tr> <tr> <th></th> <th>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><u>1,177</u></td> <td colspan="4"><u>1,177</u></td> </tr> <tr> <td>정 무 직</td> <td>1</td> <td colspan="4">1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<u>1,173</u></td> <td colspan="4"><u>1,173</u>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8</td> <td>6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</td> <td><u>53</u></td> <td>32</td> <td>2</td> <td><u>9</u></td> <td>10</td> </tr> <tr> <td>6급 이하 계</td> <td><u>1,109</u></td> <td colspan="4"><u>1,109</u>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 계</td> <td>2</td> <td colspan="4">2</td> </tr> <tr> <td>별정직 계</td> <td>3</td> <td colspan="4">3</td> </tr> <tr> <td>5급 상당</td> <td>1</td> <td colspan="4">1</td> </tr> <tr> <td>6급 상당 이하</td> <td>2</td> <td colspan="4">2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구의회사무국		보건소	동			총 계	<u>1,177</u>	<u>1,177</u>				정 무 직	1	1				일반직 계	<u>1,173</u>	<u>1,173</u>				3급	1	1				4급	8	6	1	1		5급	<u>53</u>	32	2	<u>9</u>	10	6급 이하 계	<u>1,109</u>	<u>1,109</u>				전문경력관 계	2	2				별정직 계	3	3				5급 상당	1	1				6급 상당 이하	2	2	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			본청	구의회사무국			보건소	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<u>1,172</u>	<u>1,172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 무 직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<u>1,168</u>	<u>1,168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8	6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52	32	2	8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이하 계	<u>1,105</u>	<u>1,105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계	2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 계	3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상당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상당 이하	2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구의회사무국		보건소	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<u>1,177</u>	<u>1,177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 무 직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<u>1,173</u>	<u>1,173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8	6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<u>53</u>	32	2	<u>9</u>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이하 계	<u>1,109</u>	<u>1,109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계	2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 계	3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상당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상당 이하	2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(2022.1.13.시행)에 따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
- 감염병 방역체계 확립 및 공공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천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- 총 정원 1,172명에서 1,177명으로 총 5명 증가로 구본청은 2명 감소 보건소는 5명 증가, 구의회는 2명 증가임
- 직급별로 살펴보면 5급은 의약과 신설에 따른 의무직 1명 증가, 6급은 보건직 1명, 간호직 1명 증가, 7급은 의회사무국 행정직 2명 증가, 간호직 1명 증가, 시설관리 2명 감소, 8급은 행정직 1명 감소 및 1명 증가, 농업직 1명 증가임
-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역할 증대와 감염병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보건소 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개정 사항으로 적법 타당함

붙임 : 1.관계법령 1부.

관계 법령

「지방자치법」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2020.3.10.>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 <2020.3.10.>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회 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"지방전문경력관"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7. 3., 2013. 12. 4.>

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12. 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⑤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